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토목학회간
업무협력 약정
Memorandum Of Understanding



2010. 4. 21



해외건설협회와 대한토목학회간 업무협력 약정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와 대한토목학회(이하 “학회”)는 해외 건설산업에 관한 정보 교류와 연구조사 등에 상호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은 “협회”와 “학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해외건설산업에 관한 연구 개발과 정보 교류, 그리고 건설산업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력사항)

협약 당사자인 “협회”와 “학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해외건설산업의 선진화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해외건설산업의 현안 과제의 발굴 조사 및 대응
3. 해외건설산업의 홍보에 관련한 협력 및 정보 교류
4. 세미나, 토론회 등 건설관련 행사에 후원 명칭의 사용
5. 당사자 간의 각종 간행물 교류
6. 기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조 (유효기간)

1. 본 약정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2. 본 약정은 종료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협약 기간 만료 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만료 의사를 포함한 서면을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상기 의사 표시로써 본 약정은 협약 기간 만료일에 종료한 것으로 본다.
3. 협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협약 당사자의 종료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약정은 매 1년간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변경 및 해지)

1. 본 약정의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협약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뒤 동의를 구할 수 있다.
3. 협약기간 중 상대방에게 명예와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조 (불가항력)

“협회”와 “학회”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시민봉기 및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6 조 (일반사항)

1. “협회”와 “학회”는 성실하게 상호 단체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본 약정의 각 조항에 해석에 관하여 상호간의 이의가 있거나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다.
3.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회”와 “학회”는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7 조 (비밀준수 의무 등)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2010년 4월 21일

이재균

전경수

해 외 건 설 협 회
회 장 이 재 균

대 한 토 목 학 회
회 장 전 경 수